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201

발의연월일: 2024. 7. 24.

발 의 자: 박성훈·안상훈·고동진

백종헌 • 박충권 • 조배숙

정연욱 · 김성원 · 이헌승

조지연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의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하여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경찰청, '24. 3.)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21년 13,278건, '22년 13,830건, '23년 13,772건으로 나타나,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의 결격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다시금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음주측정을 앞두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사건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도주과정에서 다른 차량과의 충돌, 인명사고에 이르기까지 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음.

뿐만 아니라 최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뒤 고의로 술을 더 마시는 사건이 발생함. 이러한 경우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현행법상 입법적 보완을 통해 음주운전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 제44조 및 제148조의2).
- 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제1항제8호 신설).
- 다.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함(안 제93조제1항제3호 및 제148조의2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제82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사람

제93조제1항제3호 중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으로 한다.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중 "위반한"을 "위반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아니하는"을 "아니하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으로 하며, "한정한다)은"을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사람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3조,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제96조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
전 금지) ① ~ ④ (생 략)	전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
	<u></u> 이 교
<u><신 설></u>	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
	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
	<u>면 아니 된다.</u>
<u>⑤</u> (생 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	
을 수 없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3
	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
	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
	우도 포함한다)한 사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①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	

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 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 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 제8 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 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 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 우 취소하여야 하는 운전면허 의 범위는 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받은 그 운전면허로 한정한다), 제18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한 다.

1. · 2. (생략)

<u>.</u>
1. • 2. (현행과 같음)

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u>아니한</u>경우

4. ~ 20. (생 략)

② ~ ④ (생 략)

-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 2. 3. (생략)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u>아니하거나</u>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4. ~ 20.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8조의2(벌칙) ①
1 <u>위반하여 경찰공</u>
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
거나 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u>도주한</u>
2. · 3. (현행과 같음)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 하지 <u>아니하는</u>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 로 <u>한정한다)은</u>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u>아니하거나 측정을 피하기</u>
위하여 도주한
한정한다) 또는 제44조제5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
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
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
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u>마신 사람은</u>
③ · ④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